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부속요청서

2002. 4. 16.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2년 4월 3일

○ 회부일자 : 2002년 4월 4일

다. 상정일자 : 제1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2002. 4. 12 :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 홍 기)

가. 제안이유

-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수림내 입목의 우리도 지분 수의 분배금을 적립금으로 운영하여, 공유림 확대조성 및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분수림설정 수익금의 적립규정 신설 (제35조의2 제2항)
 - 분수림의 수익으로 분배된 수익금은 공유림을 확대 조성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함.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)
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수 국유림 내 입목의 수익분배금을 적립하여 도유림 매입에 사용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나,

산림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국유림에 대한 분수림설정제도(산림법 제88조)가 산림녹화사업이 마무리되어 법률 제6382호(2001. 1. 26)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,

동 조례 제35조의2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분수림 설정에 관하여 폐지된 산림법 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사유와,

동 조례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의2(분수림 설정)를 제시한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2018년 12월 14일 제199회 제2차 부속 17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